

카운티

# 고의적 프로그램 위반(IPV: Intentional Program Violation) 또는 고의가 아닌 가구 과실(IHE: Inadvertent Household Error)에서 IPV로 상태 변경을 위한 식품권 상환 통지서

(ADDRESSEE)

통지일	:	_____
해당자 이름	:	_____
번호	:	_____
담당자 이름	:	_____
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주소	:	_____
_____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 가구는 과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식품권이 아래 가구에게 발급되었습니다:

- 귀하의 가구.
- 귀하가 보증한 가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이미 식품권 초과 발급에 대한 사실을 들었고 카운티에서는 초과 발급으로 인해 매월 삭감된 식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이나 주정부 청문회에서 이것이 IPV라고 판결을 내렸거나, 또는 귀하가 자격 박탈 동의서(Disqualification Consent Agreement) 또는 행정 자격 박탈 청문회 권리포기 증서(Administrative Disqualification Hearing Waiver)에 서명하였으므로 현재 IPV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귀하기 현재 상환해야 할 액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이 액수는 이전에 귀하가 들은 액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에서는 귀하의 매달 수당 중에서 10% 또는 \$10(더 많은 쪽)의 초과 발급분을 징수했습니다. 카운티에서는 현재 귀하의 매달 수당 중 최고 20% 또는 \$20(더 많은 쪽)를 징수할 수 있어 귀하가 받고 있는 식품권 액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 가구는 식품권 수당으로 \$\_\_\_\_\_를 받았습니다.

귀하 가구는 원래 식품권 수당으로 \$\_\_\_\_\_를 받았어야 합니다. \$\_\_\_\_\_ (추가 발급된 식품권 액수)는 귀하가 받은 수당에서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 수당을 뺀 액수입니다.

귀하는 규정보다 많이 발급된 식품권 액수를 상환해야 합니다. 추가 발급된 식품권 액수인 \$\_\_\_\_\_ 가 \_\_\_\_\_기간 동안 지급되었습니다.

- 저희는 지난 수 개월 간 귀하에게 혜택 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거나 해당 상환금 중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액수는 \$\_\_\_\_\_ 만큼 감소했습니다.
- IPV가 된 이후로 초과 발급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액수는 \$\_\_\_\_\_ 만큼 증가했습니다.

귀하는 현재 \$\_\_\_\_\_를 상환해야 합니다.

**규정:**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MPP 63-801.43, 63-801.23.

가까운 복지 사무소에서 해당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청문회:** 귀하가 초과 발급을 **이유**로 이전에 청문회를 연 적이 **없을** 경우에 이 조치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환해야 할 새로운 식품권 액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뒷면에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귀하의 혜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러한 초과 발급분을 상환하기 위해 어떠한 SSI 혜택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 초과 발급이 나타나면 가구원 중 모든 성인으로부터 상환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추가 의무사항:

규정 외로 추가 발급된 식품권 수당을 모두 지불하거나, 또는 동봉된 상환 계약서 (DFA 377.7G)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다음, 동의한 바와 같이 상환금을 지불합니다.

## 프로그램 조치:

- 상환 계약서는 카운티에서 판단한 귀하의 현재 지불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지불 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지불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를 받은 날짜 이후 30일 이내에 이 계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귀하가 받는 식품권 혜택 수당은 \_\_\_\_\_에서부터 \_\_\_\_\_ %만큼 삭감됩니다.
- 귀하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카운티에서는 법원, 기타 징수 기관의 절차, 연방 정부 징수 조치 등과 같은 기타 상환금 징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IPV가 IHE일 경우에 귀하가 상환금을 갚는 데 동의하더라도 처벌은 적용됩니다.
- 지급 요구를 불이행하거나 귀하 가구가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귀하는 추가 처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카운티는 주정부/연방 정부 소득세 환급분을 가져가거나 임금이나 보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초과 발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이번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식품권을 계속 받을 경우에 카운티는 초과 발급분을 징수하기 위해 식품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과 발급분을 상환하기에 앞서 식품권을 중단할 경우, 카운티는 징수해야 할 금액을 소득세 환급분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청문회 권리

귀하가 카운티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뿐입니다. 이러한 90일의 기간은 카운티가 귀하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현금 보조, Medi-Cal, 식품권 또는 보육 지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에 귀하의 현금 보조 또는 Medi-Cal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에 귀하의 보육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또는 인증 기간 만료일(더 빠른 쪽)까지 귀하의 식품권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청문회에서 카운티가 옳다고 판결할 경우, 귀하가 받은 현금 보조, 식품권 또는 보육 서비스 중 초과분을 상환해야 합니다. 청문회 전에 혜택을 낮추거나 중단하려면, 아래에 체크하십시오:

예, 다음 혜택을 낮추거나 중단합니다:  현금 보조  식품권  보육 서비스

다음과 같은 혜택의 청문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

###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귀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카운티에서 승인한 활동과 취업을 위한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보조 서비스 수당이 중단될 것임을 카운티에서 알려줄 경우, 귀하가 카운티에서 승인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더 이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운티에서 다른 보조 서비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알려 준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이 통지서에 명시된 액수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해당 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가 귀하에게 참석하도록 명령한 활동에 가야 합니다.
- 청문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티에서 지급하는 보조 서비스의 액수가 카운티에서 명령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활동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Cal-Learn:

- 카운티에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했을 경우, 귀하는 Cal-Learn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카운티는 승인된 활동에 대한 Cal-Learn 보조 서비스 수당만을 지급합니다.

### 기타 정보

**Medi-Cal 관리 의료 보험(Managed Care Plan) 가입자:** 이 통지서의 조치로 인해 귀하는 관리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 보험 멤버십 서비스로 연락하면 됩니다.

**양육 지원 및 의료 지원 지역 아동지원부(child support agency)**에서는 귀하가 현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아동지원부에서 현재 귀하를 위한 지원을 모으고 있을 경우, 귀하가 서면으로 중단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원 모집은 계속됩니다. 아동지원부에서는 귀하에게 현재 모인 지원금을 보낼 것이지만, 귀하가 카운티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계속 징수할 것입니다.

**가족 계획:** 복지 사무소에서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가족 계획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문회 파일:**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주정부 청문회 부서(State Hearing Division)에서는 파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에게는 청문회 전에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권리와 최소 청문회 2일 전에 귀하의 사례에 대한 카운티의 서면 진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복지부(Welfare Department),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청문회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W&I Code Sections 10850 및 10950.**)

##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 이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 이 페이지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귀하가 요청할 경우, 담당자는 이 페이지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 이 페이지를 다음 연락처로 보냅니다:

또는

- 다음 무료 전화로 연락합니다: 1-800-952-5253 또는 TDD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1-800-952-8349.

도움을 받으려면: 귀하는 위에 기재된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청문권 또는 법률 지원 소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 또는 복지 권리 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청문회에 혼자 참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요청

본인은 다음의 혜택에 대해 \_\_\_\_\_  
카운티 복지부에서 취한 조치로 인해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현금 보조       식품권       Medi-Cal  
 기타 (기재하십시오) \_\_\_\_\_

청문회를 요청하는 이유: \_\_\_\_\_  
\_\_\_\_\_

- 기재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이곳에 체크 표시를 하고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 본인에게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친족 또는 친구는 청문회에서 귀하를 위해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방언: \_\_\_\_\_

혜택이 거부, 변경 또는 중단된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스트리트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	---	------

서명	날짜
----	----

이 양식을 기재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

- 본인은 다음 지명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이 지명자가 본인의 기록을 보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지명자는 친구 또는 친족일 수는 있지만, 귀하를 위해 통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	------

스트리트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	---	------